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1.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.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3.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(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범죄피해사실,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(예: 판결문, 공소장, 불기소결정문) 5.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(예: 판결문, 배당 내용, 합의서, 입금 내용)	1. 가족관계증명서(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합니다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